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69

발의연월일: 2024. 7. 15.

발 의 자:이헌승·주진우·박성민

백종헌 • 서범수 • 김도읍

강대식 · 김성원 · 김정재

박성후 • 한기호 • 서지영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장교, 부사관 등 군 간부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, 병사의 봉급 인상에 따라 병사와 군 간부의 급여 차이가 줄었다는 점 이 군 간부 지원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.

특히 현행법은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, 2025년에 병장 봉급으로 총 205만원이 지급되어 초 급간부보다 병사의 봉급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 음.

이에 초급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3호처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#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처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이 「군인사법」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3호처목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받는 급여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2조(비과세소득) 다음 각 호의	제12조(비과세소득)		
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			
세하지 아니한다.			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		
3.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	3		
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			
하는 소득			
가. ~ 저. (생 략)	가. ~ 저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처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		
	교, 준사관 및 부사관이		
	「군인사법」 제7조에 따		
	른 의무복무기간 중 5년		
	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		
	으로 정하는 기간에 받는		
	<u>급여</u>		
4.·5. (생 략)	4.·5. (현행과 같음)		